

대학 내 및 주변 1인가구 밀집지역 안전을 위한 교육부 · 경찰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업무협약서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하 “협약 기관”이라 한다)는 대학가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 기관이 대학가 주변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협력한다.

1. 경찰·대학 합동 범죄예방진단 활성화
2.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공동 추진
3. 대학가 주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대학·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학가 공동체치안 협의체’ 구성
4. 기타 대학가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사항
 - △대학생 순찰대 구성 △대학 내 범죄예방교육 등

제3조(협약의 이행) ① 협약 기관은 제2조 사항들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추진사항 공유 및 상호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② 협력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자료의 공유) 협약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6조(협약의 변경·해지) 이 협약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 논의를 통해 협약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협약 기관은 협약서 4부를 각각 서명하여 기관별로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9월 4일



부총리
유은혜

청장
민갑룡

회장
김헌영

회장
이기우

유은혜

민갑룡

김헌영

이기우